

2024년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참여자 모집

재단법인 영월문화관광재단 영월문화도시센터에서는 시민행동으로 빛나는 문화충전 도시 영월을 위한 '2024년 문화도시 시민추진단'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.

2024년 2월 20일

재단법인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



I 모집개요

- 공 고 명 : 2024년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참여자 모집 공고
- 모집 및 접수 기간 : 2024.02.20.(화)~03.01.(금)
- 활동대상 : 지역을 바꿔보고 싶은 주민들(단체 및 모임)
 - ※ 개인으로 신청 후 분과제안 및 선택 가능
- 활동규모
 - 12개 분과 / 분과별 각 6명 이상 / 총90명 내외
 - 문화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키워드의 분과를 제안 받아 진행 (관광, 문화교육, 문화다양성, 문화예술, 미디어활용, 사회적경제, 자연환경, 축제, 청소년, 홍보마케팅 등)
- 주요활동
 - 문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
 - 문화도시 공론의 장을 통한 쌍방향, 다방향 사업 발굴 및 연계
 - 문화자치생태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'영월시민문화배심원' 구성, 운영
 - 주민 주도형 거버넌스를 전제로 문화영월총회와 분과위원회,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추후 다양한 워킹그룹별 유기적 협치 구조화

II

세부내용(운영계획)

○ 추진 방법

- 분과 구성 : 문화예술, 문화다양성, 문화교육, 사회적경제, 홍보마케팅, 축제, 관광 등 관심 분야에 따라 분과를 선택하여 활동하는 주민 거버넌스 모집
- 분과협의회 : 각 분과위원장이 모여 분과별 의제 논의 및 협력
- 문화정책실험 프로젝트 : 제안된 정책을 실험하기 위한 장 마련
(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으로 전문가 자문 필수)
- 문화영월총회 : 분과협의회에서 상정된 의제를 민주적 합의와 시민이 의사결정하는 하는 총회
-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: 문화영월총회에서 제안한 의제, 사업을 심의·의결
- 문화도시 워킹그룹 : 향후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워킹그룹 선발



- ‘영월시민문화배심원’ 구성 :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판단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및 문화도시 사업 모니터링 등 배심원의 참여 기회 확대 운영

○ 추진 일정

활 동	일 정	세부내용
모집공고 및 접수	2024.02.20.(화)~03.01.(금)	03.01.(금) 18:00까지 접수
분과 구성	2024.03.08.(금)	선정 분과 결과 안내
분과별 워크숍	2024.03.11.~03.29.	분과별 진행
영월시민문화배심원 모집		배심원 선발 및 교육
분과회의 및 분과협의회 진행	2024.04.~11.(약 8개월)	분과회의(월1회), 분과협의회(분기별1회)
분과별 정책실험 진행	2024.05.~10(약 6개월)	분과별 진행
영월문화총회, 정책위원회 개최	2024.10.	분과별 정책제안 및 의사결정(분과별 문화의제 또는 문화정책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제시)
성과공유회	2024.11.	문화도시 페스타 참여

※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

※ 문의 :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 ☎ 033-375-6372

○ 지원사항

- 분과회의 참석 시 소정의 회의 수당 지급 (분과별 지급, 회의록 제출)
- 분과별 문화정책 실험 프로젝트 지원금 지급 (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)
- 포럼, 세미나 등 문화도시 각종 행사 초대 및 참여 가능

Ⅲ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구분	내용
신청방법	• 제출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제출 : E-MAIL 접수 (hyein23@ywcf.or.kr) ※ 서류 다운로드 : 영월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※ E-MAIL 및 방문 접수 가능(방문 접수: 문화도시센터(진달래장, 영월로 2113)) ※ E-MAIL 접수 후 확인 전화 요망 (☎ 문의 : 033-375-6372)
제출서류	① 분과(단체) 소개서 ② 회원 명부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③ 민주적 사업 참가 및 운영에 관한 서약서 ※ 제출서류는 별첨 [서식] 참조

Ⅳ 준수사항

-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분과 토의 및 포럼 등 분과별 사례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행사에 참여해야 함

Ⅴ 유의사항

- 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아래의 경우 활동비를 회수 조치함
 - 관계 법령 및 조례 위반
 -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활동비를 지원받은 경우
 - 정당한 사유 없이 미활동